

# - 2022년 제2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- 항공조종(헬리콥터) 실기시험 일정 알림

## 1. 개 요

○ 시험일정 : '22. 9. 15.(목) 09:30 ~ 18:00

분야	일 시		집결시간	응시계급	응시번호
헬리콥터 조종사	연습	9. 15.(목) 10:00~12:00	09:30	경위	총 원
	시험	9. 15.(목) 13:30~18:00	13:00	경위	총 원

※ 시험시간 : 1인당 약 20분 평가(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), 실기 후 구술시험 진행

※ 상기 해당 집결시간에 집결하지 않은 응시자는 연습 및 시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

○ 장 소 : 경남 사천시 사남면 유천리 916,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  
서문 면회실 (항공우주박물관 방면)

\* 응시자 집결장소 :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 서문 면회실

\*\* 상세장소는 「<http://naver.me/5qR2R3mT> (네이버 지도)」 아래 사진 등 참조



## 2. 평가 내용

○ 평가기종 : KUH-1(교육용 Simulator)

○ 평가내용

채용분야	응시계급	평가기준 및 배점비율		
		구분	내용	비율
항공조종 (헬리콥터)	경위	조종능력	▶ 제자리비행 수평이동	10%
			지시사항 이행능력	▶ 함상이함 요령
		▶ 함상착함 요령		30%
		▶ 시계비행 상승, 선회 ▶ 계기비행수평, 강하		10%
		실무능력	▶ 항공상식 및 운항관련 실무지식	20%

## 3. 유의사항

○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필요 시 현장에서 관계자 입회하에 「자가검진 키트」로 검사할 수 있으며,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만 입장 가능합니다.

**\* 본 공지문 「붙임 1) 자가문진표」는 당일 제출해야 합니다.**

○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시험장 입장 후 시험종료 시까지 퇴장할 수 없으며, 연습 비행 후 시험장소 구내식당을 이용하여 식사를 합니다.

**\* 구내식당 식권은 응시자가 개별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.**

○ 시험실 입장 전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전자·통신기기(스마트 폰, 스마트 워치, 태블릿, 전자시계, 녹음기 등)는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. 소지 금지물품을 소지하거나, 시험 진행 후 자진반납 시에도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.

○ 조별 보안절차 진행(신분증 필히 지참)으로 개인이동 불가(집결시간 엄수)

○ 연습비행은 희망자\*한하여 진행되며, 공지된 집결시간 미준수자는 연습비행 또는 시험비행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

**\* 연습비행 참여여부는 시험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.**

○ 연습 및 평가 진행시간은 시험장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○ 기타 유의사항은 당초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## 4. 코로나19 대응 안내사항

- ① 항공조종 실기시험의 특성(장소 한정, 민간시설 임대, 시험일정 변경 불가 등) 상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대상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1. 코로나19 확진환자
2. 의사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(관련 규정에 따른 자가격리 대상자 포함)

- ② 모든 응시자는 사전에 「붙임1. 코로나 자가문진표」를 출력하여, 연습·시험 비행 당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집결지에서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
- ③ 모든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 전 발열검사, 손 소독 등 지정된 출입절차에 따라야 하며, 발열(37.5℃ 이상)자 등은 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④ 모든 응시자는 시험장에서는 개인마스크(KF-94 이상)\*를 상시 착용하여야 하며, 신분확인을 위해 일시적으로 마스크 탈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\* 마스크 분실 및 사용 중 훼손 등에 대비하여 예비 마스크 준비 권장
- ⑤ 비행용 개인장갑은 정해진 소독 절차를 거친 후 착용이 가능하며, 소독 등 방역절차를 거치지 않은 장갑은 착용이 불가합니다.
- ⑥ 손 소독, 발열검사, 상시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해양경찰청에서 정한 방침에 따르지 않거나 원활한 시험 진행을 위한 시험 관계자의 지시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는 즉시 퇴실 조치합니다.

※ 기타 상세사항은 해양경찰청 인재선발계(032-835-233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**붙임 1****코로나19 (자가) 문진표**

\* 2차 검진용 동일 (지참 문진표는 정상이나, 현장 발열자 등 발생시에도 사용)

**코로나19(COVID-19) 문진표(시험 비행일 기준으로 작성)**

▣ 성명 :

▣ 수험번호 :

A. 증상 / 자가진단 (해당항목에  하세요.) 발열       인후통       기침       호흡곤란       콧물, 코막힘 가래       오한       근육통       후각·미각소실       복통·설사(구토)B. 노출 / 접촉력 / 해외방문력 / 해열제 복용 (해당항목에  하세요.)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 지역 방문을 방문하는 등 역학적 연관성 최근 14일 이내에 증상발생 기간 중인 확진환자와 접촉 최근 14일 이내에 외국 여행 6시간 이내 해열제(감기약 포함) 복용

## C. 선별진료소 등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후 검사가 진행 중이며, 검사결과 통보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까?

 예 아니오

'예'라고 답한 경우 검사일은 ?

## ■ 개인정보 제공 동의

상기 문진에 대한 대답은 모두 진실이며, 만약 문진표 내용 상 어떠한 허위사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될 수 있음을 확인하며,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질 것을 약속합니다. 또한, 상기 문진표의 개인정보 제공 및 사용에 동의합니다. 본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, 거부 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\* 수집한 정보는 의심환자 파악을 위해서만 사용되며, 사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폐기에정입니다.

생년월일 :

성명 :

(인)

##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사전안내(요약)

\* 상세사항은 (<http://gosi.kcg.go.kr>)의 공지사항 중 「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알림」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,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응시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립니다.

- ✓ 코로나19 감염 및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「2022년 해양경찰청 채용시험」 전 과정(필기·실기·적성·체력·면접시험)에 대해 응시자 외 **외부인**(가족, 친구, 학원 관계자, 인근 주민 등)의 **출입을 전면 통제**합니다.
- ✓ 해양경찰청 필기시험은 **코로나19 확진자**(자가격리자 포함)도 사전에 「**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알림**」에서 공지한 바와 같이 일정한 절차(신청서 제출 등)에 따라 **시험에 응시\***할 수 있습니다.

\* **다만, 항공조종 실기시험 대상자는** 시험장소의 제약과 시험성격 상 **응시불가**

- ✓ 다음 「**해양경찰청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**」을 반드시 준수 바랍니다.
  1. **모든 시험장내에서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**해야 하며, 미착용자는 시험장 출입이 금지되고, 정당한 이유없이 마스크를 탈의할 경우 퇴실조치 합니다.
    - 신분확인 등 시험감독관 요청 및 허가 시에만 예외적으로 허용
    - 마스크 분실 및 사용 중 훼손 등에 대비하여 마스크 여분 소지 권장
  2. **문진표 지참(제출) 및 시험장 출입 전 손 소독, 발열검사를** 받아야 합니다.
    - 문진표는 사전 출력 후 시험당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현장에서 제출
    - 발열검사 등 출입절차는 감염증 예방을 위해 응시자 간 적정거리를 유지해 실시
    - 입실 시간 소요 등을 감안해 미리 시험장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.
  3. 현장에서 발열 및 기침 등 **이상증상 발현 시** 증상에 따라 **시험응시 제한 및 격리시험실로 이동하여 시험이 진행**될 수 있습니다.
  4. **해열제(감기약)를 복용하였거나, 기침, 호흡기 증상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** 반드시 방역담당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  5. 지정장소 외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음식을 먹거나 마실 수 없습니다.
- ✓ 코로나19 주요증상(발열, 기침, 구토 등) 의심 응시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질병관리청 또는 보건소 등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 「코로나19」 감염 및 확산 예방을 위한 시험관계자의 **협조요청에 불응할 경우 즉시 퇴실 조치**될 수 있습니다.

## < 코로나19 사례정의 >

본 사례 정의는 국내 유입된 코로나19의 위기경보 수준 '심각단계' 상황에 적용하며, 국내 확진환자 발생, 역학조사 결과 및 유행 수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# ◆ 확진환자

- ▶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
  - ※ 진단검사 :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유전자(PCR) 검사, 바이러스 분리

### ◆ 의사환자

- ▶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
  - ※ 주요 임상증상 : 발열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

### ◆ 조사대상 유증상자(Patient Under Investigation, PUI)

-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(PUI 1)
-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(PUI 2)
-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(PUI 3)
  - ※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이상 시(또는 별도공지 기간),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

### ◆ 감염병의심자

- ▶ 감염병환자,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(이하 "감염병환자등")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(이하 "접촉자")
  - 접촉자의 구분은 시·군·구 보건소 및 시·도 즉각대응팀이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함
  - 접촉자는 역학조사에서 확정된 자 외에 신고, 접촉자 모니터링 등을 통해 추가될 수 있음
-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
-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





# 꼭!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

## 국민 예방수칙



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



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



씻지 않은 손으로 눈·코·입 만지지 않기

특히 임신부, 65세 이상, 만성질환자 외출 시 꼭 준수



발열,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



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



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

## 유증상자\* 예방수칙

\* 발열, 호흡기 증상(기침, 목아픔 등)이 나타난 사람



통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기



3-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



38°C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

콜센터(☎1339, 지역번호+120), 관할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



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하기



진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여부 알리기



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에서는

외출,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격리자는 의료인, 방역당국의 지시 철저히 따르기



#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

## [올바른 손씻기 6단계]




**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로  
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**

##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!



## [올바른 기침예절]

--	--	--

발행일 2019.11.5.